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4. 7 선고 2020나25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4. 7 선고 2020나2503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11. 4 선고 2020가합1000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서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연우

변론 종결2021. 3. 17.

판결 선고2021. 4. 7.

제1심판결청주지방법원 2020. 11. 4. 선고 2020가합1000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B와 피고 사이에 2019. 3.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위 B에게 청주지방법원 2019. 3. 22. 접수 제343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위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D(이하 'B', 'D'이라 한다)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부터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때까지도, B의 재산관계나 B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운영실태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수익자의 악의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22107 판결 등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을다 제9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D이 관련사건(청주지방법원 2019가단 35339호)에서 '피고가 B의 구체적인 재산관계나 영업상황 등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고, 피고로부터 빌린 돈은 B이 운영하는 업체(N)가 아닌 D이 운영하는 업체(A)에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기초사실과 을다 제3호증의 기재, 을다 제9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D의 언니이고 B이 D의 배우자인 점, ②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8. 4. 2. B과 D이 함께 피고에게 차용증(을다 제3호증)을 작성해 준 점, ③ 위 차용증에 '만약 계약이행을 이행하지 못하면 현재 거주지(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피고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거주지를 이전해 주기로 약속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④ 위 기재 내용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2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9. 5. 14. B으로부터 D에게 그 소유 명의가 이전된 점, ⑤ D이 위 관련사건에서, '근저당권을 언니(피고)가 해달라고 하면서 저한테 엄마를 모시고 있으니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우선 니 앞으로 해놓아라, 신랑(B)은 못 미더우니까', '불안하니까 언니(피고)가(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니 앞으로 얼른 빨리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피고로부터 2~3년에 걸쳐서 차용해 온 게 7,000만 원 정도인데, 이자를 처음에는 조금 줬는데, 그 후로는 못 줬어요. 이자를 못 주고 있는데 친언니니까 또 4,000만 원을 빌려주더라구요. 근데 생활이 어려워서 이자는 또 못 줬어요.'라고 진술한 점, 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B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할 것임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한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원익선

판사권노을

판사김지건

별지